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643호

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(정비구역등의 해제)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 결정된 정비(예정)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4년 12월 26일
서 울 특 별 시 장

1. (도시정비형)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: 1개 구역
가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1조 제1항 제6호

구역해제 현황

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: 정비예정구역 해제

구분	구역명	위치	면 적(㎡)	정비 수법	비고
기정	강북7 재정비촉진구역	강북구 미아동 60-5 일대	11,526	전면 철거형	-
변경	일몰제로 인한 해제				

□ 정비구역 변경(해제)

구분	구역명	위치	면 적(㎡)			비고
			기정	증·감	변경	
변경	강북7 재정비촉진구역 (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)	강북구 미아동 60-5 일대	11,526	감)11,526	-	-

□ 정비계획 변경(환원 및 폐지)
○ 용도지역·지구(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)
○ 토지이용계획(폐지)

구분		명칭	면 적(㎡)	비 율(%)	비고
합계			11,526	100.0	-
기정	정비기반 시설 등	소계	3,041	26.4	순부담율 : 24.9%
		도로	2,994	26.0	-

구분		명칭	면 적(㎡)	비 율(%)	비고
		전기공급설비	47	0.4	-
	획지		8,485	73.6	공개공지 775.4㎡ 포함 (대지면적의 9.1%)
변경	일몰제로 인한 해제				

※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건축시설계획(폐지)

구분	면적(㎡)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주된 용도	연면적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 (지하 /지상)
		명칭	면적(㎡)						
기정	11,526	7-1	7,224	미아동 60-5일대	판매, 업무, 교육연구시설, 공동주택	77,569㎡	60 이하	기준:296이하 허용:500이하 상한:661이하	100 이하 (5/26)
		7-2	1,261	미아동 465-6일대	근린생활시설	5,553㎡	60 이하	기준:300이하 허용:360이하	40 이하 (1/7)
변경	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								

※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2조(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)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,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

2. 위치도 및 지형도면: 붙임과 같음

○ 위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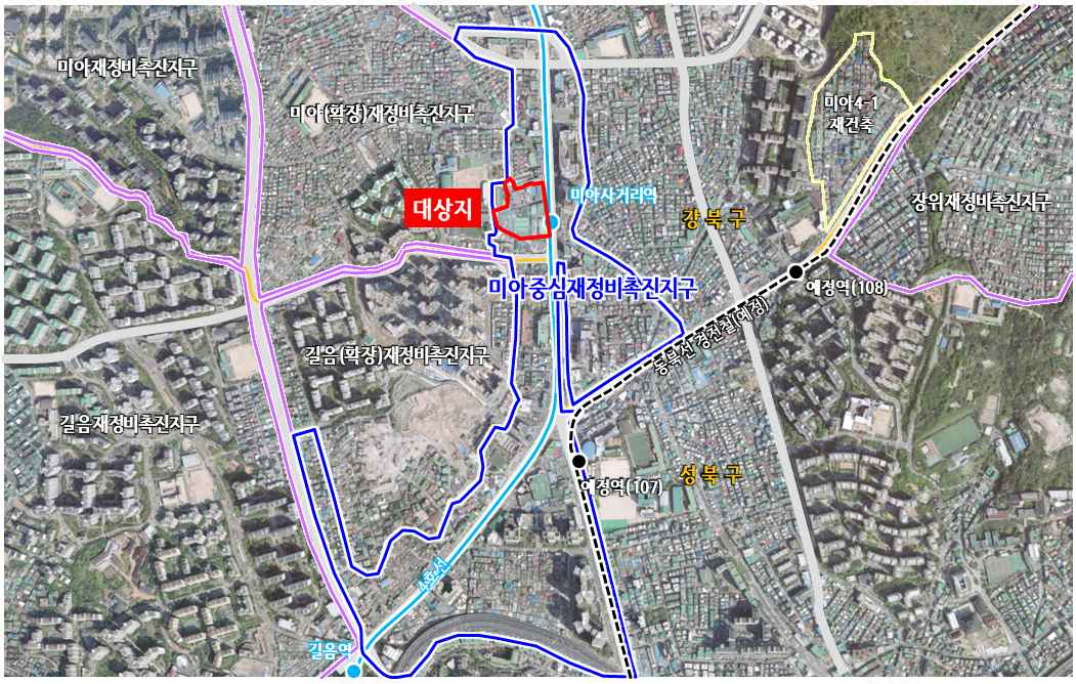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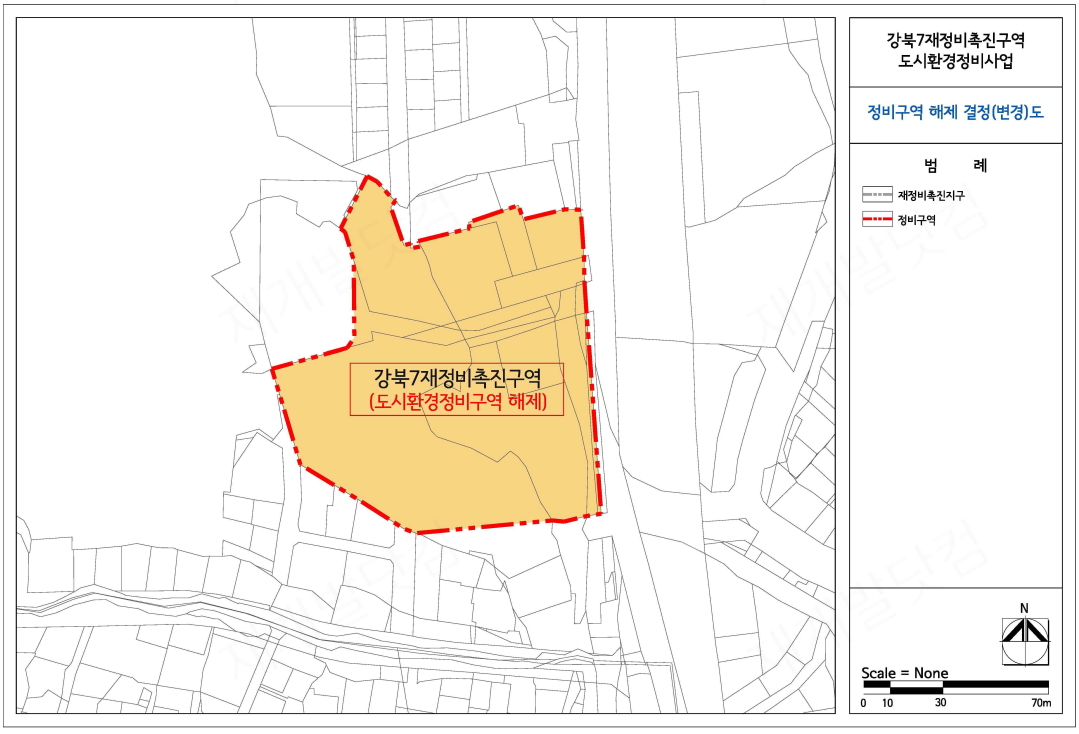
○ 정비구역 해제 결정도